

심사분야 - 회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따른 이익조정 수단에 관한 연구

곽지영(제1저자)

세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회계학과 조교수

오명전(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제1저자: 곽지영

전화번호 : 043-649-1250

핸드폰번호 : 010-9991-8820

E-mail 주소 : jykwak@semyung.ac.kr

교신저자: 오명전

전화번호 : 02-2077-7523

핸드폰번호 : 010-3826-3636

E-mail 주소 : mjoh@sookmyung.ac.kr

원고매수 : 22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과제번호 1-1403-0120)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따른 이익조정 수단에 관한 연구

곽지영¹⁾

오명전²⁾

<요약>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거나 검토범위제한으로 인하여 검토의견이 제한된 기업이 이익조정수단으로 어떠한 발생액 형태를 이용하는지 살펴하였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이 적정인 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비세무조정발생액(book-tax conformity accruals)과 조세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세무조정발생액(book-only accruals) 중 어떠한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에 속한 3,990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은 적정인 기업들에 비해 세무조정발생액은 더 작고, 비세무조정발생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비세무조정발생액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이익조정 과정에서 조세부담이 수반되는 비세무조정발생액을 선택하는 것은 외부감사인의 입증절차 강화로 조세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세무조정발생액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따른 비세무조정발생액 및 세무조정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른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차별적 선택에 대해 실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글 색인어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세무조정발생액, 세무조정발생액, 중요한 취약점, 검토범위제한

I. 서론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거나 검토범위제한으로 인하여 검토의견이 제한된 기업(이하 비적정인 기업이라 한다)이 이익조정수단으로 어떠한

1) 세명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제1저자, jykwak@semyung.ac.kr).

2)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교신저자, mjohn@sookmyung.ac.kr).

발생액 형태를 이용하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이 적정인 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비세무조정발생액(book-tax conformity accruals)과 조세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세무조정발생액(book-only accruals) 중 어떠한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엔론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업 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용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외부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은 감사인이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하였는지 여부, 검토절차에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검토범위제한도 없다면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에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예외적인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재한다. 그러나 검토범위에 제한이 있었다면 한정적으로 검토의견을 표명하거나 검토의견 표명을 거절하게 되고, 만약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재량적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이용하여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의 이익조정이 적정인 기업들에 비해 다른지 분석하였다(Doyle 외 2007; 김효진·김정은, 2006; 조현우·유경연, 2006; 신현걸, 2007). 연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의 이익조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하였는데, 재량적발생액에는 회계이익뿐만 아니라 세무이익도 동시에 조정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Calegari 2000; 오광육과 정석우 2010; 최원욱 외 2013). 구체적으로 발생액은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이 동일한 방향으로 조정되는 비세무조정발생액(book-tax conformity accruals)과 회계이익이 조정되더라도 세무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세무조정발생액(book-only accrual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조정하고자 할 때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 중 어떠한 발생액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이익조정에 따른 조세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이 적정인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 중 어떠한 발생액을 이용하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은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악화된 경우가 많아 상장폐지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익조정의 유인이 크다. 그리고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은 외부감사인들이 통제위험을 크게 평가하게 되고, 기말감사시 입증절차를 보다 확대 실시하게 되므로 이익조정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적정인 기업들에 비해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이라는 상충된 요소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고려할지는 실증적인 의문사항이다.

연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은 적정인 기업들에 비해 세무조정발생액은 더 작고, 비세무조정발생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비세무조정발생액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이익조정수단으로 조세부담이 없는 세무조정발생액보다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비세무조정발생액을 선택한 것은 외부감사인의 강화된 감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세무조정발생액의 선택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을 전기 대비 당기의 변화분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이익조정 수단으로 어떠한 발생액을 선택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른 이익조정과 조세부담의 차별적 선택에 대해 실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세무적 관점에서 이익조정이라는 경영자의 재량적 행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연구와 관련된 규정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에 대해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II. 관련 규정 및 선행연구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규정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이사회나, 경영진,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기업의 활동이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의 효율과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COSO 2003).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내부통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최고경영자에 의해 지지되지 못한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내부의 담합 등에 의해 일단 부정이 개입된다면 이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업무분장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대기업에서 일어났던 분식회계의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회계처리의 원인이 내부통제제도의 미비 또는 부적절한 설계와 운용에 기인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증은 엔론 사태 이후에 재무제표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한 제도로서 Sarbanes-Oxley Act의 404조에 의하여 2004년 도입된 이래 이 제도의 효과와 비용에 대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감법 제2조3항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정보의 중대한 오류를 방지하여 작성 및 공시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 내부관리회계제도 운영실태 보고내용 검토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보고서

한국공인회계사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모범규준과 함께 적용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이하 검토기준)을 2005년 6월에 제정·발표하였다. 동 검토기준은 모범규준의 적용시 적용하도

록 하고 있으며, 모범규준의 적용 이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보고요령(2005년 3월 제정,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검토기준에 따르면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는 합리적 확신(resonable assurance)에 근거하는 반면,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는 소극적 확신(negative assurance)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기준은 미국 PCAOB Auditing Standard(AS) No. 2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에 대해 감사(audit)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검토(review)를 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즉 감사의 경우 높은 수준의 확신(적극적 확신)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하며 감사의견표명에 따른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반면 검토보고의 경우 감사의견보다 낮은 보통수준의 확신(소극적 확신)을 근거로 검토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검토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자(내부감사, 내부회계관리자 등 포함), 타감사인 등이 수행하였던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여, 문서의 관련내용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질문을 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하는 등 감사절차보다는 제한된 절차를 수행하며, 그 결과 소극적 확신을 검토보고서에 표명하게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표명은 경영자의 운영상태 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및 검토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범위제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감사인은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하였는지 여부, 검토절차에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검토의견을 표명한다.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도 없다면 감사인은 검토보고서에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에 예외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검토범위 제한이 있었다면 한정적으로 검토의견을 표명하거나 검토의견의 표명을 거절한다. 한편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면 <표 1>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PCAOB의 AS No. 2 문단 130과 국내검토기준에서는 미비점 유형을 유의한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과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부통제상의 미비점이란 경영진이나 임원들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과정에서 통제의 설계나 운영의 왜곡(misstatement)을 정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없게 할 때 존재한다.

<표 1>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의 검토보고서 기재(신현경 2007)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기재
경영자가 운영실태보고서에 그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경우	감사인은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나타난 중요한 취약점을 기재
경영자가 운영실태보고서에 감사인이 발견한 중요한 취약점의 일부만 기재한 경우	감사인은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나타난 중요한 취약점과 운영실태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기타의 중요한 취약점을 기재
경영자가 운영실태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즉,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보고한 경우)	감사인은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중요한 취약점을 기재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경영자 자체평가에 대해 검토절차를 수행한다. 감사인의 검토절차는 경영자의 자체평가 결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게 문서화 되었다는 전제로 수행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경영자의 결론과 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문서화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실상 중요한 범위제한 사유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파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평가하여 그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되어서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인지의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① 유의한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이란 GAAP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발생시키고, 기록하고 절차를 밟거나 보고하는 기업의 능력에 부정(fraud)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함으로서 재무제표상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되거나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성이 '만에 하나라도' 존재하게 만드는 통제 미비점이다. 기준은 그 이상으로 적발되지 않은 왜곡의 가능성을 고려한 후,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확실히 중요하지 않다(clearly be immaterial)'는 결론을 내리면, 왜곡은 '중요하지 않다(inconsequential)'고 구체화 하여 언급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이 특정한 왜곡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 왜곡은 하찮은 것이 아니다(more than inconsequential).

②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이란 재무제표상의 왜곡이 예방되거나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more-than-remote likelihood) 존재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제 미비점 및 중요한 통제 미비점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표2>는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의 분류기준을 보여준다. 기업은 중요한 취약점을 식별하고 공식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있다. 경영진이 유의한 미비점을 식별하면, 그 존재와 본질을 공식적으로 공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그 식별된 유의한 미비점이 다른 미비점들과 조합이 되었을 때 중요한 취약점이 된다고 판단하면, 경영진은 그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유의한 미비점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의 감사인은 PCAOB AS No.에서 요구하듯이, 그 위험을 공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wC 2005). 따라서 검토업무의 수행에 제한이 없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 관점에서 설계 및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검토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표2>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의 분류기준

미비점의 분류	재무제표 왜곡표시 (misstatement)의 발생가능성	재무제표 왜곡표시 (misstatement)의 잠재적 크기
유의한 미비점 (significant deficiency)	낮지 않음 (more than remote)	미칠 수 있는 영향금액이 의미가 있음(More than inconsequential)
중요한 취약점 (material weakness)	낮지 않음 (more than remote)	미칠 수 있는 영향금액이 중요함 (material)

1) 통제미비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완통제의 효과성을 고려한 후에 개별적 통제미비점 또는 다수의 통제미비점의 결합된 영향이 상기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통제미비점은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다.

2)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05년 6월 28일에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의 <보론 1>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 등의 평가절차.

2.2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이익조정 관련 선행연구

회계이익을 통한 이익조정수단으로만 초점이 맞추어진 재량적 발생액을 최초로 세무상 관점에서 조명한 Calegari(2000)는 발생액을 세법과의 정합성이 높은 발생액(book-tax conformity accruals; BTA)과 세법과의 정합성이 낮은 발생액(book-only accruals; BOA)으로 세분화하고 한계세율이 높아진 기업이 세분화된 발생액을 차별적으로 조정하는지 분석하였다. 1986년의 조세개혁법안(TRA86)으로 인해 과세이연의 혜택이 사라지고 조세부담이 높아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조세계획을 위하여 세법과의 정합성이 높은 발생액(비세무조정발생액: BTA)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낮아진 회계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세법과의 정합성이 낮은 발생액(세무조정발생액: BOA)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오광육·정석우(2010)는 Calegari(2000)의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세법을 반영하여 세법과의 정합성이 높은 발생액(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법과의 정합성이 낮은 발생액(세무조정발생액)으로 정의하였다. 비세무조정발생액은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므로 결산에 계상한 금액이 세무조정 없이 세무이익에 그대로 반영되는 발생액이며, 세무조정발생액은 세법이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산 상 계상한 금액이 세무조정을 통해 취소되어 세무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발생액이다. 이러한 발생액 구성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조세비용절감을 위해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을 하향조정하고 재무보고비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철·윤순석(2011)은 발생액 추정 방법에 있어서 총 발생액을 법인세동반 발생액과 법인세비동반발생액으로 분해하여 이익관리수단으로서의 발생액요소간의 상충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절감을 위해 법인세동반 발생액을 재량적으로 이용하고 재무보고비용과의 상충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비동반발생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최원숙외 2인(2013)은 재량적 발생액을 세무이익의 조정에 이용되는 비세무조정발생액과 회계이익의 조정에 이용되는 세무조정발생액으로 분해하고, 이 두 가지 구성요소들이 세무이익과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같이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의 하향 조정 수준이 높을수록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였으며,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의 상향조정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였다. 조세비용의 감소와 회계이익의 상향 조정 유인 중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채비율을 고려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회계이익의 정보효과 감소만이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 하향 조정으로 인한 세무이익의 정보효과 감소만이 나타났다.

위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세분화된 재량적 발생액의 구성요소들이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세무이익의 조정을 위해서도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정존스 모형의 재량적 발생액과 같이 세분화하지 않은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이익조정을 추정하는 경우, 조세계획을 위한 발생액의 조정이 통제되지 못함으로서 이익조정 수준이 잘못 추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Tang(2006)은 보고이익차이 중에서 회계기준과 세법의 구조적인 차이(비재량적 부분)를 제거한 잔차를 통해 재량적 보고이익차이를 추정하였다. 재량적 보고이익차이가 기업의 이익조정

과 조세회피에 대한 보다 정교한 측정치임을 제시하였으나, 재량적 보고이익차이는 조세계획과 이익조정이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별도로 분리하여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양준선·곽재우(2012)는 이연법인세 정보를 이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도입 전에 비하여 도입 이후에 이익조정이 감소하는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이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이익조정을 더 많이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검토보고서 의견에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연구는 크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Doyle 외 2007; 김효진·김정은, 2006; 조현우·유경연, 2006; 신현결, 200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신현결, 2007; Krishnan, 2005; Ashbaugh 외 2007; 이명곤 외 2007; 김용식 외 2007; 곽지영 외 2009) 등이 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의 결과들은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이후 이익조정이 감소하며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의 이익조정이 더 크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이익조정의 측정치로써 주로 발생액, 재량적 발생액 등을 대용변수(proxy)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은 이익조정의 측정치이기는 하지만 연구자의 계산과정이 개입되어 전통적인 발생액 예측오차 모형이 지닌 측정오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양준선·곽재우,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보완 및 해결하고자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회계이익만을 고려한 선행연구에 비하여 이익조정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추가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 된다. 더 나아가 Calegari(2000)가 제안한 방법에 우리나라 세법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오광욱·정석우(2010)의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수단을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기업의 분식회계와 회계부정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세분화된 이익조정의 행태를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회계투명성 증대를 위한 관련 회계·세무 법규 및 실무의 개선 측면에서 갖는 정책적 시사점 또한 크다.

III. 연구설계

1. 가설설정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은 적정인 기업들에 비해 이익조정 정도가 더 크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은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악화되어 상장폐지 등의 위험에 처한 경우가 많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의 동기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발생액을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비세무조정발생액(BTA)과 조세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세무조정발생액(BOA)로 구분하는 경우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세무조정발생액(BOA)이다. 왜냐하면 세무조정발생액(BOA)은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경

우, 회계이익만 상향조정되며 세무이익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익조정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증가에 따른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세무조정발생액(BOA)을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은 외부감사인들이 통제위험을 크게 평가하게 되고, 기밀감사시 입증절차를 보다 확대 실시하게 되므로 이익조정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는 이익조정수단으로 세무조정발생액(BOA)의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익조정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감수하고 비세무조정발생액(BTA)을 선택하여야 한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이익조정의 유인이 더 크지만, 외부감사인의 입증절차 확대로 이익조정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익조정을 위해서 조세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비세무조정발생액(BTA)을 이용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기업은 이익조정을 위해 조세부담이 없는 세무조정발생액(BOA)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비적정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에 의한 이익조정제한의 영향으로 조세부담이 있는 비세무조정발생액(BTA)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이익조정을 위해 세무조정발생액(BOA)보다 비세무조정발생액(BTA)을 선택할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이 적정인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수단으로 비세무조정발생액(book-tax conformity accruals; BTA)과 세무조정발생액(book-only accruals; BOA) 중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지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상황에 따라 회계이익만을 상승시키고 세무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무조정발생액만을 이용할 수도 있고,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비세무조정발생액만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조정발생액과 비세무조정발생액을 모두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비세무조정발생액(세무조정발생액) 간의 관계를 다음의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DBTA(DBOA)_{i,t} = \beta_0 + \beta_1 ICS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CFO_{i,t} + \beta_5 ROA_{i,t} + \beta_6 LOSS + \beta_7 \Sigma YD + \epsilon_{i,t} \quad (1)$$

주) 변수의 정의

$DBTA_{i,t}$	=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
$DBOA_{i,t}$	=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
$ICS_{i,t}$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면 1, 적정이면 0
$SIZE_{i,t}$	=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LEV_{i,t}$	=	부채비율(부채총액 / 자산총액)
$CFO_{i,t}$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기초자산총액)

$ROA_{i,t}$	=	총자산이익률(t기의 당기순이익 / t기의 자산총액)
$LOSS_{i,t}$	=	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YD	=	연도별 더미

만약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이 적정인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수단으로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을 이용한다면 위의 연구모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의 회귀계수(β_1)는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이익조정을 위해 세무조정발생액(BOA)보다 비세무조정발생액(BTA)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연구모형에서 ICS와 DBTA 간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고, ICS와 DBOA 간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위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에서 발생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영업활동 현금흐름(CFO), 총자산이익률(ROA), 그리고 당기손실 보고 여부(LOSS)를 포함하였다.

3.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의 측정

비세무조정발생액(book-tax conformity accruals; BTA)은 회계이익의 증감과 세무이익의 증감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기업의 회계선택이다. 즉, 비세무조정발생액(BTA)을 이용하여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면 세무이익 또한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세무조정발생액(book-only accruals; BOA)은 회계이익이 증감하더라도 세무이익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회계선택이다. 따라서 세무조정발생액(BOA)을 이용하여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더라도 동 조정액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취소되어 세무이익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Calegari(2000)가 제안한 방법에 우리나라 세법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오광옥·정석우(2010)의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 측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 발생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 (2)와 같이 Jones(1991), Sloan(1996), Bradshaw et al.(2001) 등이 사용한 영업 관련 유동발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TA_{i,t} = (\Delta CA_{i,t} - \Delta CASH_{i,t}) - (\Delta CL_{i,t} - \Delta STD_{i,t}) - DEP_{i,t} \quad (2)$$

주) 변수의 정의

$TA_{i,t}$	=	총발생액
$\Delta CA_{i,t}$	=	유동자산의 증감
$\Delta Cash_{i,t}$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Delta CL_{i,t}$	=	유동부채의 증감
$\Delta STD_{i,t}$	=	유동성장기부채의 증감
$Dep_{i,t}$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위 모든 변수는 기초 총자산으로 표준화함)

식 (2)의 총발생액은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라 세무이익이 동시에 변하는 식 (3)의 비세무

조정발생액(BTA)과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라 세무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 식 (4)의 세무조정발생액(BOA)으로 구분할 수 있다.

$$BTA_{i,t} = TA_{i,t} + \Delta TAXPA Y_{i,t} - \Delta TAXREC_{i,t} + \Delta DTL_{i,t} - \Delta DTA_{i,t} + DEP_{i,t} + \Delta ALLOW_{i,t} \quad (3)$$

$$BOA_{i,t} = TA_{i,t} - BTA_{i,t} \quad (4)$$

주) 변수의 정의

$BTA_{i,t}$	=	비세무조정발생액(book-tax conformity accruals)
$BOA_{i,t}$	=	세무조정발생액(book-only accruals)
$\Delta DTA_{i,t}$	=	유동성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감
$\Delta DTL_{i,t}$	=	유동성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감
$\Delta TAXREC_{i,t}$	=	선급법인세의 증감
$\Delta TAXPAY_{i,t}$	=	미지급법인세의 증감
$Dep_{i,t}$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Delta ALLOW_{i,t}$	=	유동성충당금 및 충당부채의 증감(대손충당금, 기타대손충당금, 평가충당금 등의 증감)

(위 모든 변수는 기초 총자산으로 표준화함)

식 (3)의 비세무조정발생액(BTA)는 총발생액(TA)에서 법인세납부액 관련 자산 및 부채(TAXREC, TAXPAY),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DTA, DTL), 감가상각비(DEP), 그리고 각종 충당금 및 충당부채를 조정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식 (4)의 세무조정발생액(BOA)은 총발생액(TA)에서 식 (3)의 비세무조정발생액(BTA)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식 (3)의 총발생액(TA)에서 조정된 항목들은 식 (4)의 세무조정발생액(BOA)에 포함되는데, 이 조정항목들을 세무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무조정발생액(BOA)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Calegari 2000; 오광옥과 정석우 2010; 최원옥 외 2013).

먼저 법인세납부액 관련 자산 및 부채(TAXREC, TAXPAY),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DTA, DTL)는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의 결과물로써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항목들은 세무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DEP)의 경우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회계상 장부에 비용으로 인식하면 세무상 손금인정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상 손금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를 세무조정발생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전액을 세무조정발생액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당금 및 충당부채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에서 는 열거된 일부 충당금에 한해 세법상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열거되지 않은 충당부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충당금 및 충당부채 또한 세무조정발생액으로 분류하였다.

비세무조정발생액(BTA)과 세무조정발생액(BOA)는 다시 재량적인 부분과 비재량적인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식 (5)와 (6)에서와 같이 수정존스모형(modified Jones model)을 적용하여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iscretionary book-tax conformity accruals; DBTA)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iscretionary book-only accruals; DBOA)을 측정하였다(DeFond and Jiambalvo, 1994; Subramanyam, 1996)³⁾.

$$DBTA_{i,t} = BTA_{i,t} - \left[\hat{\alpha}_0 \left(\frac{1}{Asset_{i,t-1}} \right) + \hat{\alpha}_1 \left(\frac{\Delta ADJREV_{i,t}}{Asset_{i,t-1}} \right) + \hat{\alpha}_2 \left(\frac{CFO_{i,t}}{Asset_{i,t-1}} \right) \right] \quad (5)$$

$$DBOA_{i,t} = BOA_{i,t} - \left[\hat{\alpha}_0 \left(\frac{1}{Asset_{i,t-1}} \right) + \hat{\alpha}_1 \left(\frac{\Delta ADJREV_{i,t}}{Asset_{i,t-1}} \right) + \hat{\alpha}_2 \left(\frac{PPE_{i,t}}{Asset_{i,t-1}} \right) + \hat{\alpha}_3 \left(\frac{CFO_{i,t}}{Asset_{i,t-1}} \right) \right] \quad (6)$$

주) 변수의 정의

$DBTA_{i,t}$	=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
$DBOA_{i,t}$	=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
$\Delta ADJREV_{i,t}$	= 매출액의 증감에서 매출채권의 증감을 차감한 금액
$CFO_{i,t}$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PPE_{i,t}$	= 감가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ASSET_{i,t-1}$	= 기초총자산

4.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⁴⁾에 상장된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1)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말 결산법인
-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 (3)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입수할 수 있는 기업
- (4) 자기자본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금융업을 표본에서 제외한 이유는 금융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양식이 상이하고 및 업종의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산일이 12월말인 비금융업에 속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기간을 2010년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표본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010년까지는 과거 K-GAAP이 적용되었고, 2011년부터 K-IFRS가 의무적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변수들은 회계기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된 2010년까지를 연구대상기간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3,990 기업-연도 표본이 선정되었다. 최종 표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표본은 3,802 기업-연도, 비적정인 표본은 188 기업-연도이다.

3) 측정과정에서 중분류 산업분류-연도별 표본이 10개 미만인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유가증권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일정수 이상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 코스닥 기업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3>의 패널A와 패널 B는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것이다. 변수들의 극단치가 연구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표 3> 기술통계량

패널 A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표본(n=3,80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DBTA	-0.011	0.187	-0.656	-0.011	0.692
DBOA	0.004	0.072	-0.510	0.014	0.241
SIZE	17.979	0.810	16.110	17.931	20.303
LEV	0.407	0.206	0.039	0.403	0.903
CFO	0.022	0.153	-0.644	0.029	0.383
ROA	-0.062	0.271	-1.872	0.017	0.230
LOSS	0.390	0.488	0.000	0.000	1.000

패널 B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n=18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DBTA	0.020	0.318	-0.656	-0.016	0.692
DBOA	-0.111	0.191	-0.510	-0.050	0.241
SIZE	17.361	0.732	16.110	17.357	20.029
LEV	0.540	0.233	0.063	0.538	0.903
CFO	-0.163	0.234	-0.644	-0.099	0.383
ROA	-0.545	0.568	-1.872	-0.353	0.230
LOSS	0.883	0.322	0.000	1.000	1.000

패널 C : 검토의견이 적정인 표본과 비적정인 표본간 평균 및 중위수 검정

변수	평균			중위수		
	적정	비적정	t 값	적정	비적정	z 값
DBTA	-0.011	0.020	-2.19**	-0.011	-0.016	-0.80
DBOA	0.004	-0.111	18.95***	0.014	-0.050	11.70***

주) 변수 정의

DBTA : 비세무조정발생액

DBOA : 세무조정발생액

ICS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 : 기업규모(t기의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LEV: 부채비율(t기의 부채 / t기의 자산총액)

CFO : 영업현금흐름(t기의 영업현금흐름 / 기초자산총액)

ROA: 총자산이익률(t기의 당기순이익 / t기의 자산총액)

LOSS : 당기순손실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모든 연속변수의 분포에서 상·하위 1% 수준에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우선,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표본의 경우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의 평균(중위수)은 -0.011(-0.011), 최솟값은 -0.656, 최댓값은 0.6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의 평균(중위수)은 0.004(0.014), 최솟값은 -0.510, 최댓값은 0.241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표본은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의 평균보다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의 평균이 더 크게 나타나 이익조정수단으로 조세부담이 없는 세무조정발생액을 선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의 경우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의 평균(중위수)은 0.020(-0.016), 최솟값은 -0.656, 최댓값은 0.6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의 평균(중위수)은 -0.111(-0.050), 최솟값은 -0.510, 최댓값은 0.241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은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의 평균보다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의 평균이 더 크게 나타나 이익조정수단으로 조세부담이 수반되는 비세무조정발생액을 선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표본의 경우 기업규모(SIZE)의 평균은 17.979, 부채비율(LEV)의 평균은 0.407, 영업현금흐름(CFO)의 평균은 0.022, 총자산이익률(ROA)의 평균은 -0.062이고 당기손실을 보고(LOSS)한 기업은 39%였다.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의 경우 기업규모(SIZE)의 평균은 17.361, 부채비율(LEV)의 평균은 0.540, 영업현금흐름(CFO)의 평균은 -0.163, 총자산이익률(ROA)의 평균은 -0.545이고 당기손실을 보고(LOSS)한 기업은 88%였다. 이러한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볼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은 적정인 표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의 페널 C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표본과 비적정인 표본 간에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의 평균(중위수)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평균(중위수)검정을 수행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은 적정인 표본과 비교하여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의 평균은 유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의 평균은 유의적으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의 경우 이익조정수단으로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보다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을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중위수 검정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은 적정인 표본과 비교하여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의 중위수가 유의적으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의 중위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이익조정수단으로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은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의 경우 이익조정수단으로 재량적 세

무조정발생액(DBOA) 대신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인 기업규모(SIZE), 영업현금흐름(CFO)과 총자산이익률(ROA)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은 기업규모가 작고, 영업현금흐름과 총자산이익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채비율(LEV)과 당기손실(LOSS) 여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은 부채비율이 높고 당기손실을 보고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들간에 상관계수가 대부분 0.5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명	DBTA	DBOA	ICS	SIZE	LEV	CFO	ROA	LOSS
DBTA	1							
DBOA	-0.250***	1						
ICS	0.035**	-0.287***	1					
SIZE	0.013	0.093***	-0.160***	1				
LEV	-0.214***	-0.172***	0.135***	0.151***	1			
CFO	0.032**	0.330***	-0.242***	0.256***	-0.152***	1		
ROA	0.092***	0.474***	-0.331***	0.403***	-0.257***	0.461***	1	
LOSS	-0.189***	-0.255***	0.212***	-0.320***	0.215***	-0.449***	-0.574***	1

- 주) ① 변수의 정의는 <표3>의 하단과 동일함
- ② 상관계수는 Pearson 상관계수이며, 괄호 안은 상관계수의 유의수준임
- ③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함(양측검정)

2.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의 경우 이익조정 수단으로 조세부담이 없는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보다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을 선택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연구모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과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 간의 관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 간의 관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표 5>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이익조정 수단으로 조세부담이 없는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을 이용하지 않고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을 이용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을 이익조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외부감사인의 입증절차 강화로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의 이용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5>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재량적 비세무조정(세무조정)발생액과의 관련성⁵⁾

변수	종속변수=DBTA		종속변수=DBOA	
	Coef.	t	Coef.	t
CONSTANT	0.002	0.03	0.245	8.31***
ICS	0.078	5.27***	-0.055	-9.51***
SIZE	0.005	1.21	-0.013	-8.02***
LEV	-0.184	-11.94***	-0.005	-0.76
CFO	-0.067	-3.16***	0.077	9.34***
ROA	-0.023	-1.71*	0.121	23.51***
LOSS	-0.078	-10.13***	0.010	3.23***
YD	포함		포함	
표본수	3,990		3,990	
F-값	39.31***		150.16***	
설명력	0.088		0.272	

주) ① 변수의 정의는 <표3>의 하단과 동일함

②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함(양측검정)

<표 6>은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의 전기 대비 변화분⁶⁾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전기 대비 당기의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의 변화분(Δ DBTA)이 양(+)이면 조세를 부담하면서 회계이익을 높이는 이익조정 수준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기 대비 당기의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의 변화분(Δ DBOA)이 음(-)이면 조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회계이익을 높이는 이익조정 수준이 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의 변화분(Δ DBTA)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

5) 모든 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VIF) 값이 2미만으로 나타나 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전기 대비 당기의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의 변화분(Δ DBTA)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의 변화분(Δ DBOA)은 다음과 같이 당기의 발생액 값에서 전기의 발생액 값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Delta DBTA_{i,t} = DBTA_{i,t} - DBTA_{i,t-1}$$

$$\Delta DBOA_{i,t} = DBOA_{i,t} - DBOA_{i,t-1}$$

다. 그리고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의 변화분(\triangle DBOA)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이익조정 수단으로 조세부담이 없는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은 전기에 비해 감소시키고 조세부담이 수반되는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을 전기에 비해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기 대비 당기의 변화분을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도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비세무조정(세무조정)발생액의 변화분과의 관련

변수	종속변수= \triangle DBTA		종속변수= \triangle DBOA	
	Coef.	t	Coef.	t
CONSTANT	-0.009	-0.84	0.000	-0.09
ICS	0.091	3.96***	-0.053	-6.65***
\triangle SIZE	0.037	2.06**	-0.044	-7.00***
\triangle LEV	-0.526	-14.35***	-0.068	-5.29***
\triangle CFO	-0.088	-3.34***	0.056	6.15***
\triangle ROA	0.006	0.33	0.117	18.59***
LOSS	-0.013	-1.26	-0.001	-0.17
YD	포함		포함	
표본수	3,990		3,990	
F-값	38.47***		72.14***	
설명력	0.086		0.151	

주) ① 변수의 정의는 <표3>의 하단과 동일함

②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함(양측검정)

3. 강건성 분석

앞의 <표 5>와 <표 6>의 회귀분석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적정인 표본과 비적정인 표본을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수가 전체 표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로 인해 분석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표본선택편의 가능성을 해결한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따른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 및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던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영업현금흐름(CFO), 총자산이익률(ROA), 당기순실보고 여부(LOSS)를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과 적정인 표본을 1:2 매칭하였다.

<표 7>은 성향점수매칭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따른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 및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DBOA)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DBTA)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의 회귀계수는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재량적 세무

조정발생액(DBOA)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ICS)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의 변화분(\triangle DBTA)과 재량적 세무조정발생액의 변화분(\triangle DBOA)을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이익조정 수단으로 조세부담이 수반되는 재량적 비세무조정발생액을 선택한다는 연구가설 검증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따라서 표본선택편의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7>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에 따른
재량적 비세무조정(세무조정)발생액과의 관련성**

변수	Coef.	z 값
DBTA	0.109	2.24**
DBOA	-0.002	-0.15
\triangle DBTA	0.179	2.13**
\triangle DBOA	0.010	0.29

주) ① 변수의 정의는 <표3>의 하단과 동일함

②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의미함(양측검정)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표본과 적정인 표본을 1:2로 매칭함

V. 요약과 결론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재량적 발생액에는 회계이익뿐만 아니라 세무이익도 동시에 조정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발생액은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이 동일한 방향으로 조정되는 비세무조정발생액과 회계이익이 조정되더라도 세무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세무조정발생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 중 어떠한 발생액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이익조정에 따른 조세부담 여부가 달라진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은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악화되어 있고, 상장폐지 등의 위험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익조정의 유인이 크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은 외부감사인들이 감사위험을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입증절차를 강화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은 이익조정의 유인은 크지만 외부감사인의 입증절차 강화로 이익조정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익조정에 따른 조세부담의 선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이 적정인 기업에 비해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조세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세무조정발생액 중 어떠한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은 적정인 기업들에 비해 세무조정발생액은 더 작고, 비세무조정발생액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

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비세무조정발생액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들이 이익조정 과정에서 조세부담을 수반하는 비세무조정발생액을 선택하는 것은 외부감사인의 입증절차 강화로 조세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세무조정발생액의 이용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을 전기 대비 당기의 변화분으로 측정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종속변수인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을 측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인정 한도와 그 초과분을 구분하여 정교하게 측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세무조정발생액에 대한 경영자의 선택과정에 조세회피 유인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곽지영, 손성규, 이호영(2009),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기업 지배구조의 특성,” *회계연구*, 14(3), 83-125.
- 김용식, 황국재, 김유찬(2007), “기업의 경제적 특성과 지배구조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미치는 효과,” *회계와 감사연구*, 46, 249-275.
- 김효진, 김정은(200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장협연구*, 54, 176-204.
- 삼일회계법인(200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 *삼일포럼자료*
- 서승철, 윤순석(2011), “발생액의 세무적 분해를 통한 이익관리수단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한국회계학회)*, 36(4), 249-283.
- 신현걸(2007),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 현황 분석,” *회계저널*, 16(1), 107-128.
- 양준선, 곽재우(20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과 취약점 보고가 이연법인세 정보를 이용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17(1), 53-80.
- 오광욱, 정석우(2010), “한계세율과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과의 관계,” *세무학연구*, 27(4), 43-79.
- 이명곤, 김우영, 김종현(200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과 기업특성,” *회계정보연구*, 25(2), 161-194.
- 조현우, 유경연(2007),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계와 감사연구*, 44, 119-145
- 최원욱, 이현아, 이재홍(2013), “발생액의 구성요소가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8(4), 297-332.
- Ashbaugh, H., D. Collins, and W. Kinney(2007), “The Discovery and Reporting of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Prior to SOX-mandated Audi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 166-192.
- Bradshaw, M. T., S. A. Richardson, and R. G. Sloan(2001), “Do analysts and auditors use information in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1), 45-74.
- Calegari, M(2000), “The effect of tax accounting rules on capital structure and discretionary Accrual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0(1), 1-31.
- Committee on Sponsoring Organization(COSO)(2003), *Internal Control - Integrated Framework*.
- Defond, M. L., and J. Jiambalvo.(1994), "Debt Covenant Violation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145-176.
- Doyle, J., Ge, W., and S. McVay.(2007), “Determinants of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 193-223.
- Jones, J(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 *Journal*

- of Accounting Research** 29, 193-228.
- Krishnan, J(2005), "Audit committee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649-675.
- PwC(PriceWaterhouseCoopers)(2005), "Benchmarking of adverse opinions and material weakness," **PwC's Internal Tracking of 404 Reporting**, September(22).
- Shackelford, D. and S. Shevlin(2001), "Empirical Tax Research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 321-387.
- Sloan, R. G(1996), "Do stock prices fully reflect information in accruals and cash flows about future earnings?," **The Accounting Review**, 71(3), 289-315.
- Subramanyam, K.(1996),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 249-281.
- Tang, T(2006), "Book-tax differences, a function of accounting-tax misalignment, earnings and tax management," Ph.D Dissertation,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Using Book Tax Conformity Accruals for Earning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Internal Control System Review Opinions*

Kwak, Ji-Young**· Oh, Myeong-Jeon***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propose book tax conformity of firms that Reported Problem in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s. Tax adjustments of accruals as a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book-only accruals) and non-tax adjustments of accruals (book-tax accruals) divided and any of these two means of accrual to eanings management whether the empirical analysis. That is, this study tests whether firms reporting material weaknesses 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manage earnings more than firms reporting no material weakness i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Korea, the corporate tax accounting is recognized in the accounts if the taxable income is unchanged, but the tax law does not recognize taxable income change, but no change in the accounting income. Status report on the impact of this tax the tax burden on firms, because the connection of two types of firms use accruals likely to be discriminatory.

Many prior studies were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as a measure of earnings from, discretionary accruals may they contain elements that adjust at the same time taxable income, as well as accounting incomes(Calegari 2000; Ohgwanguk-Jeongseokwoo 2010; Choiwonuk et al 2013). Specifically, accruals are accounting income and taxable income non-tax adjustments of accruals to be adjusted in the same direction(book-tax conformity accruals) and accounting income is adjusted even be classified as a tax benefit tax adjustments of accruals (book-only accruals) does not affect the have. If the executive becomes the tax burden varies according to whether the earnings, depending on whether you are using any non-tax adjustments of accruals and tax adjustments of accruals when you want to raise accounting income.

In this paper, we analyze that the use of internal control system review opinion un-qualified firms tax adjustments of accruals as a way of earnings management compared to the qualified firms tax adjustments of accruals. In general, the review opinion are un-qualified firm's greater incentive for earnings management purposes, such as to avoid th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s(과제 번호 1-1403-0120)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emyu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listing many cases worsened the financial condition or business performance. And at the same time, unqualified review opinion firm's have been greatly since the external auditors assess control risk, more the expansion of proven procedures when the final audit will be limited to Earnings Management. How the Earnings Management and the tax burden on unqualified of firms of conflicting elements than qualified review opinion firm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empirical questions to be considered discriminatory.

2005-2010 The company i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targeting firms that have received material weakness and scope limitation studied. In this study, Calegari(2000) proposed modifications to reflect on how our country tax laws. Ohgwanguk-Jeongseokwoo(2010) adjustment of non-tax adjustments and tax adjustments accruals measurement method. The empirical results, internal control system is an unqualified review opinion firms tax adjustments of accruals as compared to the qualified opinion of smaller firms, non-tax adjustments of accruals were adjusted to be greater.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selected non-tax adjustments of accruals to the unqualified opinion of the firm's ICS review opinion involving the tax burden as a means of earnings management. Thus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review opinion unqualified of firms relatively pay less due to an enhanced audit of external auditor is to select the non-tax adjustment accruals involving tax burden than tax adjustment accruals no tax burden as a benefit adjustment means the choice of tax accruals are adjusted because the judge suppressed. Additionally, non-tax adjustments of accruals as a result of analysis by measuring minute changes in the tax adjustments of accruals of the previous year was also current term in the same way.

Thus, firms that non-reported problem in Internal Control Systems are appropriate firm's financial reporting costs that occur relatively expensive accruals tax adjustment(BOA), rather than simply increasing the tax benefit accruals non-tax adjustment(BTA) to carry through earnings respectively. This study was conducted after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by means of feedback and adjust the profits of the tax adjustment accruals (book-only accruals) and non-tax adjustments of accruals (book-tax accruals) divided by earnings management using accruals to analyze in that the previous studies was to provide a different implications. Our finding suggests a book-only accruals and book-tax accruals can be more precise measures for estimating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and tax planning as we empirically.

Key Words: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s, book-tax accruals, book-only accruals, material weakness, scope limitation*